
기업 부담은 줄이고, 투자자 보호는 강화하는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

2021. 1. 14.

금 융 위 원 회
금 융 감 독 원
한 국 거 래 소

목 차

I. 추진배경	1
II. 기업공시 현황 및 평가	2
1. 기업공시 현황	2
2. 평가	3
III. 공시제도 개선방안	5
1. 투자자의 공시정보 이용 편의 제고	6
2. 기업의 공시부담 경감	9
3. ESG 책임투자 기반조성	15
4. 투자자 보호 강화	19
IV. 향후 추진계획	28
[별첨] 기 발표·추진 중인 공시제도 개선과제	29

I. 추진배경

- 기업공시제도*는 상장기업 등으로 하여금 증권발행·유통과 관련하여 투자판단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
 - * 자본시장법에 따른 법정공시와 한국거래소규정에 따른 거래소 공시로 구분
- 최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국내외 경영환경도 급변하면서 기업·투자자간 소통채널로서 기업공시의 중요성이 부각
- 그간 금융위·원·거래소는 기업공시정보에 대한 수요 증대를 반영하되, 작성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으나,
 - * '09년 현 공시 서식체계 도입이후 총 48차례의 서식개정 등을 추진
- 공시정보의 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기업의 공시부담은 늘어나고, 투자자는 방대한 정보 중 옥석을 가려내기 어려운 한계
- 한편,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세계적으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관련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책임투자가 확산
 - 국내의 경우, 국민연금 등 연기금 중심으로 책임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나, 기업들의 ESG 정보공개는 활성화되지 못함*
 - * 국내 책임투자 규모는 약 33.2조원이며, 국민연금이 32.1조원 차지('19.12월 기준, KOGS)
 -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기업은 100여개사이나, 20개사만 거래소 공시
-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기업 공시부담은 경감하면서, 공시 사각지대를 줄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추진
 - 아울러, 기업이 적극적으로 ESG 정보를 공개하고 투자자 등이 이를 활용해 책임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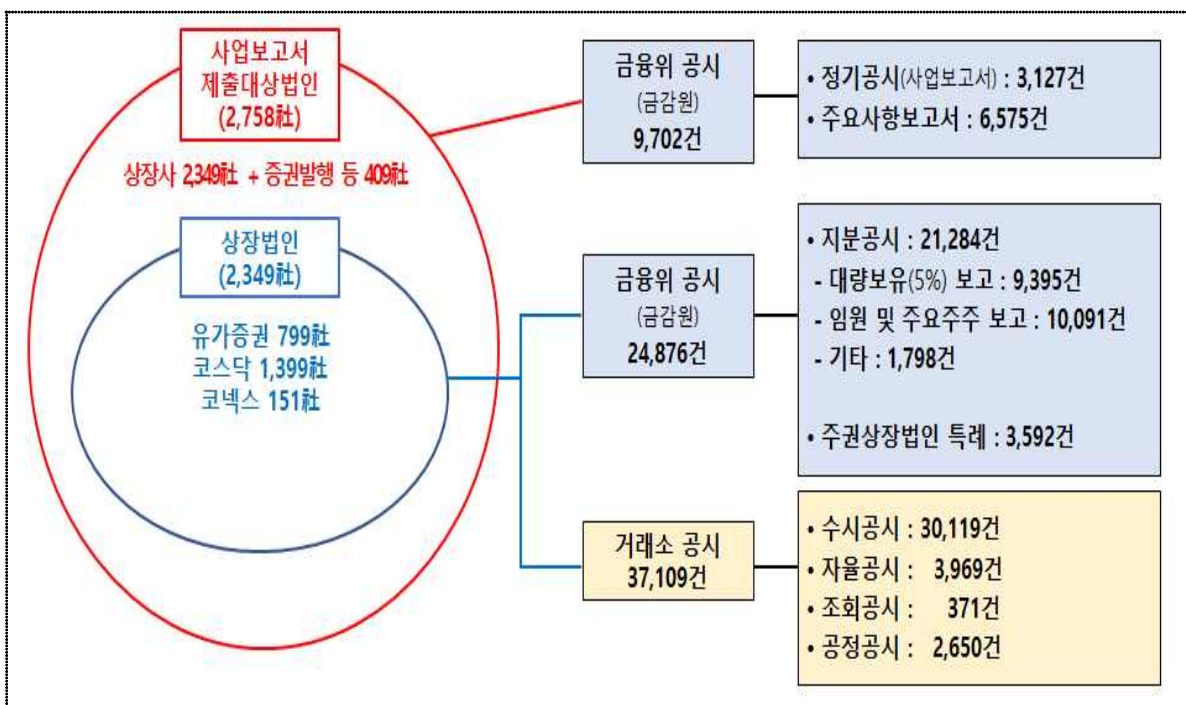
II. 기업공시 현황 및 평가

1. 기업공시 현황

- 그간 자본시장의 성장에 발맞춰 공시 제도와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공시정보의 양도 증가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14년 2,401개사→'19년 2,758개사로 지난 5년간 약 15% 증가(+357개사)
 - * 상장법인, 공모채 발행기업, 외감기업 중 증권 소유자가 500인 이상 기업
 - (공시정보) '14년 6.7만건→'19년 7.2만건*으로 지난 5년간 약 7% 증가(+0.5만건)

구 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공시정보	공시정보	
			법정공시	거래소공시
'14년(A)	2,401개사	6.7만건	3.8만건	2.9만건
'19년(B)	2,758개사	7.2만건	3.5만건	3.7만건
B-A	357개사	0.5만건	△0.3만건	0.8만건

< 기업공시 현황('19.12월 기준) >



2. 평 가

(1) 그간의 성과

◇ 기업의 공시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시 정보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

- 「기업공시종합시스템」 구축(15년)을 통해 기업의 공시 자료 작성부담을 경감하고 금감원·거래소간 중복공시 문제 해소
- 거래소 '포괄공시제도' 도입(16년)을 통해 규정에未열거된 정보*도 중요한 정보인 경우에는 기업이 판단해 공시토록 개선

* '15년 이전에는 거래소규정에 열거된 54개 수시공시항목 외에는 공시의무 無

- ESG 등 비재무적 요소를 감안한 책임투자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관련 공시를 단계적으로 확대*

* '19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상장법인에 대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의무화

-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 항목과 내용을 지속적으로 확충

* 무자본M&A, 전환사채, 회계부정 등 투자자 피해 우려사항에 대한 공시 강화

(2) 개선·보완이 필요한 부분

① 투자자들이 공시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공시대상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공시항목이 계속 추가되고 분류체계가 복잡해져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워짐

* '19년말 기준 2,758개 기업(상장사 2,349개) 등이 연간 7.2만건 이상 공시

- 최근 개인투자자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하여, 투자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시체계를 개편하고 교육을 강화할 필요

② 기업의 공시부담을 합리적으로 경감할 필요

- 기업들의 부담은 크지만, 시장에서의 활용도는 떨어지는 공시자료*는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공시부담을 경감할 필요

* 분·반기보고서 : 사업보고서에 비해 활용도는 낮으나 공시부담은 유사
투자설명서 : 통상 300페이지 분량을 서면교부(전자교부 요건이 까다로움)

- 소규모기업의 경우, 공시역량이 부족하고 관련 투자자도 소수인 점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공시부담 경감 필요

③ ESG 책임투자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필요

- ESG 책임투자 확대 추세를 감안하여, 기업들의 ESG 정보 공개를 촉진할 필요

-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자문서비스 이용수요가 점증하고 있어, 의결권 자문서비스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관리·감독 필요성 제기

④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 사각지대 축소 필요

- 공시 제도를 지속 개선해 왔으나, 여전히 일부 사각지대가 존재

< 공시 미비로 인한 투자자 피해 우려 사례 >

- ① 코스닥 상장 제약회사(기술특례 상장)가 자금조달목적(신약개발)과 무관하게 사모펀드 투자 → 공시의무가 없어 손실이 발생해도 투자자가 알지 못함
- ② 국내 상장된 역외 지주사의 경우 본국 사업자회사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만 공시하고 구체적 재무상태가 공시되지 않음 → 투자자 피해 우려

-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공시위반에 대한 제재를 정상화할 필요

Ⅲ. 공시제도 개선방안

< 기본 방향 >

투자자는 이해하기 쉽고, 기업 부담은 줄어드는
“시장친화적인 공시제도”

추진방향	추진과제
투자자의 이용 편의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업보고서 편제 체계적 개편 ② 투자자를 위한 사업보고서 바이블 발간 ③ DART 시스템 개편
기업의 공시부담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분기보고서 작성 간소화 ② 소규모기업 공시부담 경감 ③ 투자설명서 전자교부제도 개선 ④ 소액공모 결산서류 면제 ⑤ 최초 외감법인 사업보고서 유예 ⑥ 비상장법인 교육지원 강화
ESG 책임투자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화 확대 ②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활성화 ③ 스톡옵션 코드 개정 검토 ④ 의결권자문사 관련 제도 정비
투자자 보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공시 사각지대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외지주사, 기술특례 상장법인, 신규 상장법인, 영구채 ② 공시위반 제재 정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신고서 미제출 과징금 제도 개선 - 정기보고서 제출 상습위반 제재 강화 - 제재 형평 개선

1. 사업보고서 편제 체계적 개편

- (현황 및 문제점) '09년 사업보고서 도입 이후 기업경영환경이 크게 변화하였음에도 사업보고서 체계 정비 부족

* 통상 사업보고서는 300페이지 이상 ('18년 삼성전자 사업보고서는 557페이지)

- 일관된 기준 없이 개정수요에 따라 공시항목을 추가한 결과 사업보고서 체계의 통일성과 일관성 저하

< 사업보고서 서식 관련 문제 사례 >

- 새롭게 추가된 공시항목의 상당수가 'Ⅺ.그 밖의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에 포함(14개 항목)되어 있고 각 항목간 연관성도 낮음
- '배당에 관한 사항'은 'Ⅰ.회사의 개요'에 포함되어 있으나, 'Ⅲ.재무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투자자의 직관에 보다 부합
- 연관된 공시항목이 여러 곳에 산재 → 기업의 자금조달 관련 사항이 '회사의 개요', '재무에 관한 사항', '투자자보호에 관한 사항(유동화증권)'에 분산

- (개선방안) 투자자가 사업보고서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서식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비 (☞ 서식 개정)

① 공시항목 분류체계를 체계적으로 조정

- 투자자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분류체계를 조정하고, 'Ⅺ. 그 밖의 투자자보호 사항'에 집중된 일부 항목을 재분류

구분	주요 개정내용
배당금 정보	'Ⅰ.회사의 개요' → 'Ⅲ.재무정보 (6.배당에 관한 사항)'
의결권 현황	'Ⅰ.회사의 개요' → 'Ⅳ.이사회 등 회사기관 사항 (3.주주총회 사항)'
법률 등에 의한 중요한 영향 등	법률영향, 정부인증, 환경규제(녹색경영) 등을 'Ⅱ. 사업의 내용'으로 집중

② 중복·연관된 공시항목은 통합해 투자자의 종합적 이해 제고

구분	주요 개정내용
자금조달현황 공시항목 신설	'자본금변동', '재무정보' 및 '기타항목'에 산재된 자금조달 관련 정보*를 집중 * §3-3-2(전환사채 등 발행현황), §5-5-6(채무증권발행실적), §11-3-4(직접금융 자금의 사용) ** (관련조문) III. 재무에 관한 정보 → 7.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주주총회관련 사항 통합	투표제도 형태, 소수주주권, 주식사무, 경영권 경쟁, 주총의사록 등 주주총회 관련 항목을 'VI.회사 기관 사항' 중 '3.주주총회 사항'으로 집중** * §7-3-1(투표제도), §7-3-2(소수주주권), §7-3-3(경영권 경쟁), §8-1-4(주식사무), §11-1-2(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 (관련조문) VI.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 3.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 단순·정형화된 정보는 서술식보다 표로 작성토록 하여 가독성 제고

구분	주요 개정내용
'회사의 개요' 내 기본정보	- 중소기업 여부, 자본금 변동현황 등에 대해 표 작성방식 도입
'회사의 기관' 내 주총관련 사항	-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채택여부를 표에 기재

④ 서식 개편과 함께 관련 DART 메뉴를 정비*

* 기업 부담을 고려해 공시항목 신설이 아닌 기존 공시항목의 효과적 전달에 중점

2. 투자자를 위한 사업보고서 바이블 발간

- (현황 및 문제점) 정기보고서가 갈수록 복잡·방대해짐에 따라 일반투자자가 활용하기 어려워지고 있으나, 참고할 자료 부족
- (개선방안) 일반투자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참고서가 되도록 (가칭)“사업보고서 바이블*”을 발간 (☞금감원 제작·배포)

* 공시목적, 용어 해설, 주요 업종별 특성 등을 알기 쉽게 설명

3. 전자공시시스템(DART) 개편

-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전자공시시스템(DART)은 일반인에게 다소 생소한 자본시장법령상 공시의무 유형별*로 공시정보를 제공
 - * 정기공시, 주요사항보고, 발행공시, 지분공시, 기타공시, 거래소공시 등
- 일반투자자의 경우 투자에 필요한 특정정보가 어떤 공시서식에 포함되어 있는지 모를 경우에는 원하는 정보 파악이 곤란

< 현행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정보 조회화면 >

- (개선) 투자자 편의성을 고려해 전자공시시스템을 개선·보완
 - 조회수가 많은 주요 공시항목 위주로 한눈에 파악하도록 기업 분석 도구를 제공하여 수요자 관점의 정보제공체계 구축
 - 다만, 현행 조회화면도 계속 유지하여 공시서류별로 조회를 희망하는 투자자들의 정보조회 편의성을 제고
 - 검색범위를 소항목에서 사업보고서 전체로 확대하고 키워드 검색화면을 제공하여 간편한 정보검색을 지원

< 전자공시시스템 개편 방안 >

회사현황	재무정보	지배구조	투자위험요인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2. 임원의 보수 등 3. 회사의 개요 4. 사업의 개요 5. 주요 제품 및 서비스 6. 원재료 및 생산설비 7. 매출 및 수주사항 8. 경영상 주요계약, 연구 개발활동 및 특허권 등	1. 요약재무정보 2. 연결재무제표 3. 재무제표 4. 연결재무제표 주석 5. 재무제표 주석 6. 배당사항 7. 자금조달 사항 8. 기타 재무사항	1. 최대주주 2. 이사회 3. 감사제도 4. 주주총회 5. 대주주와의 거래 6. 계열회사	1.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MD&A) 2.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3. 핵심투자위험* 4. 인수인 의견* * 증권신고서 내 추출항목

2

기업의 공시부담 경감

1. 분기보고서 작성 간소화

- **(현황 및 문제점)** 분기보고서는 사업보고서 서식 및 작성기준을 그대로 준용(일부 항목은 생략 가능)
 - 분기보고서는 보고대상기간이 짧아 사업보고서 공시항목(연간 기준)은 변동이 없거나 해당이 없는 경우가 많고,
 - 제출기한이 사업보고서의 절반(45일)에 불과하여 기업이 체감하는 공시부담이 상당히 큰 편

< 분기보고서 운영사례 비교 >

구 분	우리나라	미 국	일 본	영국
제출기한	45일	40일	45일	'14년 분기보고서 제출의무 폐지 (약 60% 회사는 여전히 제출)
별도서식	없음	있음	있음	
사업보고서 대비 분량	70% 상회	49%	25%	

- **(개선방안)** 별도의 분기보고서 서식을 마련하여 투자자에 유용한 핵심정보를 보여주는데 집중 (☞ 시행령·증발공 규정·서식 개정)
 - 사업보고서 항목 중 필수항목만 기재하고 기타항목은 중요 변동이 발생한 경우 기재하는 방식으로 전환
 - ① (필수항목) 투자자의 관심이 높고, 분기 중 중요한 변동이 실제 발생하는 ①재무에 관한 사항, ②사업의 내용*
 - * '18.1분기보고서 기준 공시항목별 조회수 기준으로 각각 1위, 2위 항목
 - ② (기타항목) ①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②최대주주에 관한 사항, ③임원의 현황, ④공시진행·변경사항, ⑤우발채무 등에 대해서는 중요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기재

☞ 제도 개선시 분기보고서 공시항목이 약 40% 축소되는 효과 기대 (현행) 10개 대항목, 33개 중항목 → (개선) 6개 대항목, 20개 중항목

2. 소규모기업 공시부담 경감

□ **(현황 및 문제점)** '15년부터 자산규모 1천억원 미만의 소규모 기업에 대해 사업보고서 일부항목* 기재 생략을 허용

* 총 26개 중항목 중 5개 항목 (「회사의 개요」 중 자본금 변동현황, 「사업의 내용」 중 시장위험과 위험 관리, 「재무에 관한 사항」 중 요약 재무정보 등)

○ 전반적인 기업규모 성장에 따라 소규모기업 비중이 점차 축소* 되고, 생략항목도 다소 제한적

* 자산 1천억원 미만 기업이 전체 기업 중 차지하는 비중(회사수)은 '15년 제도 도입 당시 43%에서 '19년말 기준 40%로 감소

□ **(개선방안)** 소규모기업 기준을 정비하고, 생략항목을 확대하여 소규모기업의 공시부담을 합리적으로 경감 (☞서식 개정)

① 소규모기업 기준을 자산규모 1천억 미만 → 자산규모 1천억원 또는 매출액 500억원 미만 기준으로 조정

* 매출액 기준을 추가하여 고정자산 투자가 많은 제조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소규모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던 문제를 해소

☞ '19년말 기준: (현행 기준) **1,149사(41.6%)** → (개선 기준) **1,395사(50.5%)**

② 재무제표 주석 중복사항(대손충당금 설정현황, 재고자산 현황, 수주계약 현황, 공정가치 평가 내역) 및 주가 및 주식거래 실적 등 생략 확대

< 미국의 소규모기업 공시부담 경감 >

- '08.8월 미국은 완화된 공시의무를 적용하는 소규모기업 공시체계(**Smaller Reporting Company**)를 도입(regulation S-K 및 S-X)
- 최근 소규모기업의 기준을 대폭 상향하여 기업규모 및 이해관계자 규모에 따른 공시부담 차등화를 강화('18.6월)

기 준		현 행('18.6월~)
시가총액 75백만불(825억원) 또는 매출 50백만불(550억원) 미만	→	시가총액 250백만불(2,750억원) 또는 매출 100백만불(1,100억원) 미만

※ 신성장기업(매출 10억불 미만)도 IPO후 5년까지 완화된 공시기준 적용(JOBS법 Sec.102)

참 고

美 SEC의 소규모기업 공시의무 완화 현황

* 우리나라도 완화 : ○, 우리나라는 완화하지 않음: ×, 해당없음: N/A

구 분	완화내용	우리나라와 비교
사업의개요 (Item101)	· 사업의 연혁 기재를 최근 5년에서 3년으로 완화	X
주가, 배당금, 주식사무 등 (Item202)	· 연간주가흐름 그래프 생략	X
요약 재무정보 (Item301)	· 최근 5개 사업연도의 요약재무정보 생략	○
추가적 재무정보 (Item302)	· 최근 2개 사업연도의 분기 재무정보 생략	N/A
MD&A (Item303)	· 경영진의 전망을 향후 3년에서 2년으로 완화 · 향후 5년간 채무상환의무표 생략	X N/A
시장위험관리 (Item305)	· 시장위험 관리 생략	○
임원의 보수 (Item402)	· 보수 상위 5명에 대한 공시를 3명으로 완화 · 임원의 보수에 대한 분석 및 논의 생략 · 최근 3년간 임원보수 지급 요약 현황을 2년으로 완화 · 임원의 보수 상세내역 중 조건 미충족 보수 등 일부 생략	X N/A N/A X
이해관계자 거래 (Item404)	· 연간 12만 미달러를 초과하는 이해관계자 거래에 연말 총자산의 1%를 초과하는 거래 추가 · 이해관계자거래 검토, 승인과정 공시 생략	X
지배구조 (Item407)	· 보상위원회 보고서 공시 생략	X
증권신고서 요약, 투자위험요소 등 (Item503)	· 고정비용 대비 영업이익 비율 생략 · 투자위험요소 기재 생략	N/A
연간재무제표 (Item8-02)	·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재무상태표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완화	X
합병대상회사 재무제표 (Item8-04)	· 합병 예정(또는 기합병된) 회사의 재무제표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완화	N/A
분반기보고서 재무제표 (Item8-04)	· 간소화된 형식의 분반기보고서 재무제표 작성 허용	X

3. 투자설명서 전자교부 제도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여야 함

○ 투자설명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으나, 전자문서 교부의 경우 **요건***이 엄격하여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전자문서 교부 인정 (자본시장법 제124조 ①)

- ① 전자문서로 투자설명서를 받겠다는 수신자의 사전 동의,
- ② 수신자가 전달 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
- ③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의 확인이 가능할 것,
- ④ 전자문서와 서면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동일할 것

○ 특히, **발행회사**가 투자설명서를 교부해야 하는 경우*, 증권회사와 달리 **주주의 개인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워****, 전자문서 교부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

* 기존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주주배정공모 및 주주우선공모가 이에 해당

** 자본시장법(제315조③)과 전자증권법(제37조) 상 주주명부 및 소유자명세 작성시 주주의 성명과 주소만 의무 수집 → 연락처 파악이 어려움

○ 증권을 모집·매출하는 기업들은 **방대한 분량의 투자설명서***를 인쇄·발송해야 하는 비용과 부담을 지고 있음

* 투자설명서는 통상 300페이지 이상의 분량으로 주주배정방식 유상증자시 투자설명서 교부비용은 기업당 약 1.2~1.6억원 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

□ **(개선방안)** 전자문서 교부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주주의 연락처 (이메일 등) 수집*** 근거 마련 (☞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개정)

* 유상증자 등을 위한 주주명부 및 소유자명세 작성시 예탁결제원과 증권회사가 주주의 이메일 등을 수집하여 발행회사에 통보

4. 소액공모 관련 결산서류 제출면제 신설

- **(현황 및 문제점)** 소액공모로 모집·매출한 증권이 상환되거나 소각되지 않으면 해당 법인은 결산서류를 계속 제출해야 함
 - 소액공모는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간편하게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나, 결산서류 제출은 증권신고서 규제보다 강화*되어 있어 제도취지를 살리기 어려움
 - * 증권신고서로 모집 또는 매출한 경우에 발행인은 증권의 소유자수가 25인 미만으로 감소시 정기보고서 제출의무가 면제

< 소액공모법인 결산서류 제출의무 위반 조치현황 >

(단위 : 사)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5월	합계
소액공모 실시	95	97	90	81	31	394
결산서류 제출 위반*	8	4	5	3	1	21

* 해당 연도에 소액공모를 실시한 법인 중 결산서류 제출의무 위반(미제출, 지연제출)으로 기초치하였거나, '20년 중 조치 예정인 회사

- **(개선방안)** 소액공모로 인한 결산서류 제출도 일반공모와 동일 수준의 면제기준*을 신설하여 공시부담을 완화 (☞시행령 개정)
 - * 증권 소유자 수가 25인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결산서류 제출 면제

5. 최초 외감대상 법인 사업보고서 제출 유예

- **(현황 및 문제점)** 자본시장법령상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이 되는 경우 直前 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 해당법인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필수 첨부서류(令 §168⑥1)이며, 감사보고서 미첨부시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도록 DART시스템 설계
- 그런데, 최초로 외부감사 대상이 되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된 경우 사업보고서에 직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첨부 不可

- 외부감사법은 감사절차를 감안하여 1년간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나, 자본시장법령에는 준비기간이 규정되지 않은 상황

[예시] '19년말 기준 최초로 외감대상이 된 경우(주주수 500인 이상 가정)

- 외부감사법 : '20년도 감사보고서를 '21년에 제출
- 자본시장법 : '19년도 사업보고서에 '19년 감사보고서를 첨부해 '20.3월말까지 제출

- **(개선방안)** 최초로 외부감사 대상이 된 법인의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시 직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첨부 의무를 1년간 유예
(☞시행령 개정)

- 외부감사 절차를 감안하여 당해 감사보고서가 제출되는 다음해 부터 사업보고서 제출의무를 부여*하도록 개선

* (예시) '19년말 기준 신규 외감대상에 포함된 경우 '19년도 사업보고서가 아닌 '20년도 사업보고서부터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외부감사법과 동일하게 유예)

6. 비상장법인 교육지원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비상장기업의 경우 교육 부족으로 정기보고서 작성시 미흡사항이 다수 발생하여 투자자에게 왜곡된 정보 전달 가능성

- 그간 비상장기업 담당자의 경우 '찾아가는 설명회' 등 일부 강의, 실무안내서, 유선질의를 통해 제한적으로 업무질의 해결

- **(개선방안)** 공시 관련 동영상 강의(유통공시, 발행공시, 전자공시)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지원을 확대(금감원)

- 아울러 공시 관련 FAQ도 현행 연 1회 업데이트에서 연중 상시 업데이트 방식으로 전환*하여 이용자 지원을 강화

* 기존에는 매년 1회 기업공시 실무안내 개정시 해당 책자안에 포함된 FAQ를 편집하여 금감원 홈페이지(업무자료>공시·회계>FAQ)에 게시하였음

1.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화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19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거래소 공시 의무화

* 주주의 권리,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현황,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등 기업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담은 보고서

- 상장사의 기업지배구조 현황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이므로, 공시범위 확대 필요

- **(개선방안)** 의무공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6년부터 쏠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공시 의무화 (☞거래소 규정 개정)

※ '19년 당시 '21년 전체 코스피상장사에 대해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기업부담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의무화 단계별 확대방안 >

적용시기	'19년(既시행)	'22년	'24년	'26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1조원 이상	5천억원 이상	쏠코스피상장사

* 지배구조 보고서 의무공시 법인은 '19년 200개사 → '20년 211개사

2.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 활성화

- **(현황 및 문제점)** ESG 등 비재무적 요소를 감안한 책임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나, 기업의 관련 정보 공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매년 100여개사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나 이중 거래소에 공시하는 회사는 20개사에 불과('19년)

* 환경 관련 기획·위기로인 및 대응계획, 노사관계·양성평등 등 사회이슈 관련 개선노력 등 지속가능경영 관련 사항을 담은 보고서

- (개선방안) 거래소 자율공시를 활성화하고, 단계적으로 의무화 추진 (☞가이던스 마련, 거래소 규정 개정 검토 등)
 - 1단계(~'25년) : 'ESG 정보 공개 가이드نس(거래소, '21.1월 발표 예정)'를 제시하여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자율공시를 활성화
 - 2단계('25년~'30년) : 일정규모 이상(예: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대하여 공시 의무화
 - 3단계('30년~) : 전체 코스피 상장사에 대하여 공시 의무화

< ESG 정보 공개 가이드نس 주요내용 >

- 정확성, 명확성, 비교가능성, 적시성 등 ESG 정보 공개 일반 원칙
- 공시 표준화를 위해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Best Practice 제시
- 중요성 평가 절차, 이해관계자 소통채널 등에 대한 우수사례 소개
- 공시지표 국제표준(GRI, WFE 등), 공시 절차 및 방법 안내 등

3. 스투어드십 코드 성과 평가 및 개정 검토

- (현황) '16.12월 스투어드십 코드 제정 이후, 133개('20.11월) 기관 투자자들이 스투어드십 코드를 채택
- (개선방안) 제정 후 5년차에 접어드는 만큼, 그간의 시행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스투어드십 코드 개정 검토('21.4분기)

< 스투어드십 코드 관련 주요국 동향 >

- ◇ 최근 영국과 일본은 ESG 관련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활동 강화 등을 위하여 스투어드십 코드를 개정
 - (영국) 재무보고위원회*(Financial Reporting Council)는 스투어드십 코드를 전면 개정하여 '20년초부터 시행
 - * 영국의 회계감독기관 (독립기관이며 기업·에너지·산업부로부터 수권)
 - 수탁자책임 범위를 기존 지배구조 중심에서 환경·사회이슈까지 확대
 - (일본) 금융청은 '19.12월 스투어드십 코드 개정안을 공개, '20년 시행
 - 환경·사회·지배구조 이슈 포함, 의결권 자문사 관련 별도 원칙 등 반영

4. 의결권자문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

- **(현황 및 문제점)** 의결권자문사*는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투자대상 기업의 주주총회 안건 분석, 의결권 행사방향 권고 등 서비스 제공

※ (국내) 기업지배구조원, 대신경제연구소, 서스틴베스트 (해외) ISS, Glass-Lewis 등

-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자문사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고 있으나, 의결권자문사의 공정성·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는 미비

* 기관투자자들은 분산투자하는 수많은 기업의 주총 안건을 직접 분석하기 어렵고, 특히 연기금은 의사결정구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의결권자문서서비스 이용

- ① **(이해상충 문제)** 의결권자문사가 기관투자자와 기업을 동시에 고객으로 두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
- ② **(전문성 문제)** 의결권자문사가 안건 분석, 의결권 행사방향 자문에 필요한 충분한 분석능력과 전문성을 갖추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음
- ③ **(정확성, 투명성 문제)** 권고안을 작성하는데 사용된 자료와 출처, 작성 방법 및 과정 등에 대한 정보공시 부족

- **(개선방안)** 의결권자문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

- 「의결권자문사 이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간접적으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도록 여건 조성('21년중)

-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의결권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의결권자문사는 행동강령(code of conduct), 이해상충 방지·통제방안, 분석능력 및 전문성 등에 대한 정보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대외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

- 가이드라인 시행 상황을 보아가면서, 자본시장법에 관리·감독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의결권자문사 이용과 관련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거나,

- 의결권자문사에 대한 등록 또는 신고제 도입 등 검토

- (미국) 의결권자문사 중 투자자문업자(Investment Adviser)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자로 등록 허용(Investment Advisers Act 준수)
 - 등록 의결권자문사(예: ISS)는 이해상충 관련 계약사항 공시,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연간 검토, SEC 검사를 위한 자료 작성 및 보관 의무 등 준수
 - 미등록 의결권자문사(예: Glass-Lewis)도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SEC의 Staff Legal Bulletin*을 따라야 함
 - * 투자자문업자는 의결권자문사가 역량과 능력이 충분하지 확인해야 하며, 의결권자문사가 자문을 받는 대상과 중요한 관계 또는 주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공개해야 함을 적시

<美 의결권자문사 등록 현황>

회사	SEC 등록여부	등록 유형
ISS	○	투자자문사
Glass Lewis	×	-
Egan-Jones	○	공인 신용평가기관(NRSRO)
Macro Consulting	○	투자자문사
ProxyVote Plus	○	투자자문사

- (EU) 의결권자문사에 대한 등록·신고제는 운영하지 않고 있으나, EU의회는 '17년 주주권리지침(EU Directive 2017/828/EC)을 개정하여 의결권자문사에 대해 정보공개 등의 의무를 부과
 - 의결권자문사는 행동강령(Code of Conduct)과 그 적용상황을 매년 공개하여야 하며,
 - 연구조사 및 의결권 행사 권고에 적용된 방법론 및 모형, 사용한 정보의 출처, 잠재적인 이해상충 방지 및 관리 정책 등을 공개해야 함

1. 공시 사각지대 축소

(1) 기술특례 상장법인 공시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기술특례상장제도를 통해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이 조달목적과 달리 미사용 자금을 운용*해도 투자자는 확인이 어려움

* 정기보고서 서식에서 공모·사모로 조달한 자금 중 미사용 자금은 '예금상품 등으로 보관'으로 비고란에 간략하게 기재

- 기술상장특례기업의 취약점에 대한 충분한 정보공개를 통해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보완할 필요

< 미사용 자금 공시미흡에 따른 투자자 피해 사례 >

- 기술특례 상장제도를 통해 코스닥에 상장된 제약회사가 신약개발 명목으로 대규모 자금조달 후 자금조달 목적과 달리 사모펀드 등에 투자
 - 사모펀드 부실화에 따라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투자 사실과 손실 발생 사실이 바로 공시되지 않았으며,
 - 유상증자 추진과정에서 동 사실이 공시되면서 일시에 주가가 하락하고 투자자 피해 발생

- (개선방안) 재무구조가 취약한 특례상장기업의 경우 조달자금의 투자내역을 공개하는 등 공시의무 강화 방안 마련 (☞서식 개정)
 - 특례상장기업은 정기보고서 內 '자금의 사용내역' 항목에 미사용 자금의 구체적 운용방법, 투자내역을 기재토록 정비
 - 자금조달 관련 감감이 사용내역의 점검을 위해 부실·허위 기재 등에 대한 사후점검 및 관리를 강화

(2) 국내 상장 역외지주사 공시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국내 상장 역외지주사의 경우 예외를 인정받아 본국 사업자회사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만 공시

< 외국기업의 국내 주식시장 상장 현황 >

구분	역외지주사		고유사업 영위 회사		계
	상장유지	상장폐지	상장유지	상장폐지	
코스피	1	4	-	1	6
코스닥	12	8	9	1	30
계	13	12	9	2	36

-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역외지주사의 자체 수익구조, 유동자산 현황 등 상환능력을 파악하기 어려움

(사례) 국내 상장된 역외지주사 A사는 250억원의 사채원금 미상환으로 상장 폐지 되었는데, 연결재무제표상으로는 자기자본이 5천억원 이상에 해당

- 또한, 본국 외화 송금 절차¹⁾ 이행 여부 및 외환거래 규제²⁾ 등으로 인한 자금 미회수 위험 등의 공시가 미흡

* 1) 본국 자회사 지분인수시 자회사 자본금 전용계좌로 입금하고 외환관리 당국의 비준을 받아야 추후 해외 반출(배당금 수령 등)이 가능

2) 자회사 대여시 외환관리 당국에 동 내용과 관련한 외채등기를 해야 추후 해외 반출(원금 및 이자지급) 가능

- **(개선방안)** 국내 상장된 역외지주사의 개별 재무정보와 관련된 공시를 강화하여 투자자 피해를 예방 (☞서식 개정)

- ① 정기보고서*에 역외지주사의 현금 보유액, 유동자산 등 지급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항목을 추가

* 현재는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에 지주사의 자산/부채/자본 총액만 기재

- ② 본국 자회사에 대한 지분인수, 자금대여 등과 관련하여 외화 송금 절차, 외환거래 규제 등 관련 리스크 공시를 강화

(3) 신규 상장법인 공시정보 제공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대부분 신규 상장법인*의 직전 분·반기 재무 정보가 공시되지 않는 등 최대 6개월의 재무정보 공시 공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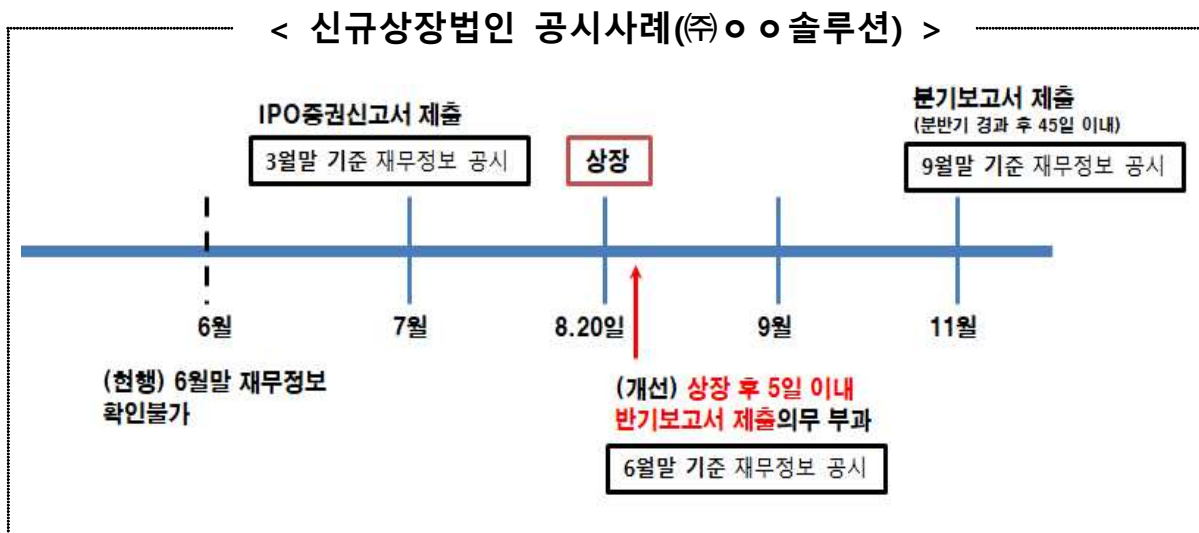
* '18년 신규 상장 49사(이전·재상장·합병상장·스팩상장사, 1분기 상장사 제외) 중 41사(83.7%)가 상장 직전 분반기 재무정보를 정기보고서 등에 미공시

- 이는 상장 직후 직전 분·반기 보고서 제출의무가 없어 증권 신고서에 첨부된 재무정보와 상장 이후 처음 제출하는 분·반기 보고서간 시차가 벌어지는 것에 기인

- 신규 상장기업의 경우 상장 직후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나 일정기간 정기보고서 공시가 누락되어 투자자 보호에 문제

- (개선방안) 신규 상장법인에 대해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의무와 동일*하게 직전 분·반기보고서 제출의무 부여(☞ 자본시장법 개정)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이 된 경우(상장 등) 5일 이내(또는 제출기한)에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4) 영구채 발행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무화

- **(현황 및 문제점)** '12년 이후 영구채*가 지속적으로 발행되고 있으며, 매년 2조원 정도 조기상환 발생
 - * 영구채는 신종자본증권으로 만기가 30년 이상이면서 원리금 상환을 발행사가 임의로 연기할 수 있는 회사채이나, 통상 발행 5년 후 조기상환되고 미상환시 금리가 가산됨
 - ** '19년 2.2조원 → '20년 2.1조원 → '21년 1.8조원
- 회사는 주로 회사채 발행을 통해 조기상환을 하고 있어 부채 비율 증가 등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으나,
- 사모로 발행되는 영구채의 경우 발행내역이 적시에 공시되지 않아*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음
 - * 영구채는 조건부자본증권과 유사하나, 조건부자본증권과 달리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님
- **(개선방안)** 회사가 영구채를 발행하는 경우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개선 (☞시행령 개정)
 - 자본시장법상 '자본 또는 부채의 변동' 관련 주요사항보고 사유에 영구채 발행을 추가

< 영구채와 조건부자본증권 비교 >

	영 구 채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인	일반기업	은행, 은행지주회사 등
발행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년 이상 만기, 조기상환 가능, 일정기간 경과 후 이자율 상향 조건(step-up)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정사유(부실금융기관 지정 등) 발생시 상각 또는 주식 전환
자본 인정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기준원 기준을 모두 만족할 경우, 회계상 자본 인정 ① 발행사가 임의로 만기 연기 ② 발행사가 조기상환 옵션 보유 ③ 계약상 상환의무가 없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상 규정을 준수해서 발행할 경우, BIS 기본자본(Tier 1) 또는 보완자본(Tier 2) 인정
현행 공시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신고서(공모) 제출, 사업보고서에 기재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신고서(공모) 제출, 사업보고서에 기재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무

2. 공시규제 위반시 제재 정상화

(1) 증권신고서 미제출 과징금 부과대상 명확화

- **(현황 및 문제점)** 자본시장법 제429조제1항제2호는 증권신고서 미제출과 중요사항 거짓기재·누락 과징금 부과대상을 구분하지 않아* 증권신고서 미제출 과징금 부과대상이 다소 불명확

* 자본시장법 제125조제1항 각 호의 자에 대해 상기 두 가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 → 각 호의 자 중 일부는 미제출 과징금 부과 불가

- **(개선방안)** 증권신고서 등 미제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자를 부과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자본시장법 개정)

- 인수인, 주선인은 증권신고서 제출여부 확인의무가 있으며, 매출인은 실질적 자금조달 주체이므로 과징금 부과 필요

* 부과사례: 인수인 1건('17년 ○○社), 주선인 2건('18년 △△△, '20년 ◇◇은행), 매출인 6건('16년 □□社 등)

< 증권신고서 미제출 과징금 부과대상 명확화(안) >

자본시장법 제125조제1항 각 호의 자		부과대상
1. 증권신고서 신고인과 신고 당시 발행인의 이사		○
2.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로서 그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집행한 자		○
3. 증권신고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회계사·감정인·신용평가사·변호사·변리사 등(그 소속단체 포함)		제외 - 미제출된 증권신고서 등에 대해 확인자는 존재할 수 없음
4. 증권신고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자기의 분석·평가·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증권신고서 등에 자기의 평가의견 등을 기재한 기타 확인자		
5. 그 증권의 인수인과 주선인		○
6.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작성자(발행인)	○
	교부자(인수인·주선인)	○ (5호 적용)
	그 외 교부자	제외 - 단순교부자 등은 확인·방지의무 인정 어려움
7. 매출인		○

(2)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은 자금조달이 이루어지는 지분증권·채무증권을 상정하고 과징금 산정기준 규정
 - 과징금 산정시 모집·매출가액을 기준금액으로 하고 있는데,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에 그대로 적용 곤란
- *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운용·판매보수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모집·매출가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면 과도한 규모의 과징금 산정

< 과징금 부과 기본구조 >

$$\begin{array}{|c|} \hline \text{기준금액} \\ \hline \text{(모집·} \\ \text{매출가액)} \\ \hline \end{array} \times \begin{array}{|c|} \hline \text{부과비율*} \\ \hline \text{(0.6\%} \\ \text{\sim 3\%)} \\ \hline \end{array} = \begin{array}{|c|} \hline \text{기본과징금} \\ \hline \text{(최저부과액} \\ \text{적용)} \\ \hline \end{array} \pm \begin{array}{|c|} \hline \text{가중} \\ \text{or 감면} \\ \hline \end{array} = \begin{array}{|c|} \hline \text{부과과징금} \\ \hline \end{array}$$

* 위반행위의 중요도(상·중·하) 및 감안사유(상향·없음·하향)를 고려하여 결정

- (개선방안) 집합투자증권의 특성을 감안하여 과징금 산정기준을 마련 (☞ 조사업무규정 개정)
 - ① 자산운용사의 연평균 운용보수율(약 0.3%)를 감안하여, 과징금 부과비율을 0.1%~0.5%로 설정

* 단, 운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운용기간을 고려하여 가중

< 지분·채무증권 부과비율 >

위반행위의 중요도 감안사유	상	중	하
상향	100분의 3	100분의 2.4	100분의 1.8
없음	100분의 2.4	100분의 1.8	100분의 1.2
하향	100분의 1.8	100분의 1.2	100분의 0.6

< 집합투자증권 부과비율 >

위반행위의 중요도 감안사유	상	중	하
상향	100분의 0.5	100분의 0.4	100분의 0.3
없음	100분의 0.4	100분의 0.3	100분의 0.2
하향	100분의 0.3	100분의 0.2	100분의 0.1

- ② 집합투자증권 발행인의 이사 및 업무집행지시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도 마련 : 위반행위와 관련된 보수에 대해 부과

$$* \text{위반행위 기간 보수 금액} \times \frac{\text{위반 대상 집합투자증권 보수·수수료}}{\text{위반행위 기간 발행인 전체 보수·수수료}}$$

(3) 정기보고서 제출규제 상습위반시 제재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정기보고서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시, 위반의 “동기”와 “결과”에 따라 과징금 또는 경고·주의가 가능하나,
 - 비상장법인의 경우 위반 “결과”가 경미*함을 근거로 통상 경고·주의 조치만 이루어져, 최근 상습 위반 사례가 증가
- * (예) 위반기간 중 장외시장에서의 일평균 주식거래량이 미미(1% 미만)한 경우 등

< 최근 5년간 정기보고서 위반 조치현황 >

(단위 : 사, 건)

구 분	1회	2회	3회 이상	합계
조치 법인수	89	18	7	114
조치 건수	89	36	22	147
(위반* 건수)	(89)	(42)	(57)	(186)

* 여러 건 위반을 한건으로 조치하는 사례가 있어 조치건수와 위반건수가 상이함

- **(개선방안)**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상습 위반하는 비상장법인에 대해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 추진 (☞ 조사업무규정 개정)
- * 정기보고서 제출 상습 위반 법인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4) 소액공모 과태료와 증권신고서 과징금간 형평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소액공모 공시서류 미제출(과태료)이 증권신고서 미제출(과징금)보다 경미한 위반임에도 과태료가 과징금보다 더 높게 부과되는 문제 존재
 - 과태료 감경근거 신설 등*을 통해 문제를 일부 시정하였으나, 시행령상 과태료 상한금액(6천만원)으로 인해 근본적 해결에 한계
- * 공모금액 5억원 미만시 과태료 30% 감경, 위반결과가 경미한 경우 경조치 근거 신설 등('20.1.16일 시행)

- 아울러, 공시서류 미제출보다 가벼운 위반*에 대해서도 동일한 과태료 상한금액이 적용되어 차등부과 할 수 없는 문제도 개선 필요

* 소액공모 실적보고서 미제출 등 기타 위반행위는 공시서류 미제출에 부수되는 가벼운 위반행위임을 감안할 필요

- **(개선방안)** 소액공모 공시서류 미제출 관련 과태료 상한금액을 3천만원*으로 하향조정 (☞시행령 개정)

* 증권신고서 미제출 과징금(10억원 기준, 18백만원)과 동일한 과태료 산출 가능

- 소액공모 실적보고서 미제출 등 기타 위반사항은 경미한 위반이므로 더 낮은 상한금액(예: 18백만원*) 설정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미제출시 과태료와 동일한 수준

(5)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간 과징금 형평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상장법인의 공시위반은 비상장법인보다 무겁게 제재해야 함에도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부과체계*로 인해 소규모 상장법인의 과징금이 더 적게 산정되는 문제 존재

* 자본시장법은 유통공시 과징금 한도를 상장법인은 정률(직전 사업연도 일평균거래량의 100분의 10(20억한도)), 비상장법인은 정액(20억원)으로 규정

→ 일평균거래금액이 작은 소규모 상장법인은 비상장법인보다 과징금이 적게 산정

< 주요사항보고서 미제출시 과징금 산정 사례 >

구 분	법상 한도 (A)	규정상 기준금액×부과비율(3%) (B)	과징금 산정금액 Min (A, B)
비상장법인	20억원	10억원×3% = 3,000만원	3,000만원
소규모 상장법인*	100만원	10억원×3% = 3,000만원	100만원

* 직전 사업연도 일평균거래금액 1,000만원, 전후 15일간 거래금액 3,000만원 가정

- **(개선방안)** 비상장법인의 과징금 한도는 하향(20억원→10억원), 소규모 상장법인은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불합리 해소 (☞ 자본시장법 개정)

IV. 기대효과

① **투자자**는 공시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여 투자 가능
☞ 루머·풍문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기초한 합리적 투자 지원

- ✓ 사업보고서 체계 개편으로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음
- ✓ DART 시스템에서 원하는 정보를 쉽게 검색(키워드검색 강화)하고, 사업보고서 바이블을 참고해 공시정보를 쉽게 이해

② **기업**의 공시부담 완화. 특히, 소규모기업의 부담 크게 경감
☞ 공시역량을 실효성 있는 정보에 집중해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 제공

- ✓ 분기보고서 공시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공시항목 40% 감소) 투자설명서(300p 이상) 전자교부 등 관련 비용도 절감
- ✓ 소규모기업으로 공시의무가 경감되는 기업이 늘어나고(현행 1,149사→개선 1,395사), 비상장법인 등에 대한 교육지원도 강화

③ **ESG** 정보 공개가 확대되고 책임투자가 활성화

☞ ESG 공시→책임투자→ESG 요소를 고려한 기업경영의 선순환 형성

- ✓ 더 많은 기업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공시(年 20% 증가 목표)하고, 내용도 충실해짐으로써 책임투자의 기초자료로 활용도 제고
- ✓ 기관투자자의 의결권자문서서비스 이용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자문서비스 이용 가능

④ 공시 사각지대가 줄어들고 **투자자 보호** 강화

☞ 투자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불법·부정행위를 억지

- ✓ 특례상장기업, 역외금융지주회사, 신규상장기업 등에 대한 공시가 확대되어 투자자 피해를 방지
- ✓ 공시규제 상습위반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제재 형평도 개선

V. 향후 추진계획

□ 법령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는 신속 추진

※ 법률(국회제출), 시행령 개정은 '21.3분기 목표로 추진

추진과제	조치사항	담당	일정
1. 투자자 이용 편의 제고			
■ 사업보고서 편제 체계적 개편	서식 개정	금감원	'21.2분기
■ 사업보고서 바이블 발간	안내서 발간	금감원	'21.2분기
■ 전자공시시스템(DART) 개편	시스템 개편	금감원	'21.2분기
2. 기업의 공시부담 경감			
■ 분기보고서 작성 간소화	시행령/ 서식 개정	금융위 금감원	'21.3분기
■ 소규모기업 공시부담 경감	서식 개정	금감원	'21.2분기
■ 투자설명서 전자교부 제도 개선	법 개정안 국회제출	금융위	'21.3분기
■ 소액공모 관련 결산서류 제출면제	시행령 개정	금융위	'21.3분기
■ 최초 외감법인 사업보고서 유예	시행령 개정	금융위	'21.3분기
■ 비상장법인 교육지원 강화	교육프로그램	금감원	'21.1분기
3. ESG 책임투자 기반 조성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화 확대	거래소 규정 개정	거래소	'22년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활성화	ESG가이던스 마련 등	금융위 거래소	'21.1월
■ 스투어드십 코드 성과 평가/개정 검토	성과 평가 등	금융위 기업지배구조원	'21.4분기
■ 의결권자문사 제도 정비	가이드라인 제정 등	금융위 금감원	'21.2분기
4. 투자자 보호 강화			
■ 공시 사각지대 축소			
- 국내 상장 역외지주사 공시 강화	서식 개정	금감원	'21.1분기
- 기술특례 상장법인 공시 강화	서식 개정	금감원	'21.1분기
- 신규 상장법인 공시 강화	법 개정안 국회제출	금융위	'21.3분기
- 영구채 발행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시행령 개정	금융위	'21.3분기
■ 공시위반 제재 정상화			
- 증권신고서 미제출 과징금 제도 정비	법 개정안 국회제출	금융위	'21.3분기
- 정기보고서 제출 상습위반 제재 강화	시행령 개정	금융위	'21.3분기
- 공시규제 위반 관련 제재 형평 개선	법 개정안 국회제출	금융위	'21.3분기

◇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20.10.19 발표)의 일환으로 아래 과제들을 이미 추진중

① 대량보유 보고의무(5%룰) 위반에 대한 과징금 현실화

- 과징금 부과한도 상향, 감경 축소 등을 통해 100만원 이하 소액 부과문제 개선

② 사모 전환사채 발행시 사전공시 의무화

- 사모 전환사채 발행시 납입기일 1주일 전에 공시*하도록 하여 기존 주주 등이 예측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개선

* 현재는 납입기일 하루 전 또는 당일 공시되어 대응 곤란

③ 콜옵션부 전환사채 관련 공시 강화

- 콜옵션부 전환사채가 최대주주 등의 지분 확대 등에 이용될 우려를 차단하기 위하여
 - 콜옵션 행사자 확정시 세부내역(행사자, 행사금액, 전환되는 주식수 등) 공시 의무화
 - 최대주주 등의 콜옵션 행사한도를 現 지분율 한도로 제한

④ 불공정거래와 연관된 공시위반의 경우 조치 강화

- 불공정거래와 연관된 공시위반의 경우 과징금을 가중하여 부과하면서, 검찰 고발·통보와 병과